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73
----------	-----

2019년 4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강동길 의원(찬성자 12명)
- 나. 제안일 : 2019년 3월 12일
- 다. 회부일 : 2019년 3월 21일
- 라. 상정일 :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4월 22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강동길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6조 추진사업 중 제4호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4호).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2019. 12. 4. ~ 2019. 12. 11)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안 제6조제4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지원 사업 추진의 근거 규정(안 제6조2)을 마련하려는 것임.
 - ※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의미(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9호)
 - ※ 웹접근성은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령자 등) 어떠한 기술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2017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계획)
-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이용 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 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68.9%로, 전년(65.1%) 대비 3.8% 포인트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국민 대비 저소득층이 86.8%, 장애인이 74.6%, 농어민이 69.8%, 장노년층이 63.1%로 조사됨.

-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1), 제32조2))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정보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 개정(의회 의결 2019. 3. 8. 개정·시행(2019. 3. 28.))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삭제된 규정을 적기에 본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	제1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

-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p>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p> <p>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 다만, 본 개정안이 최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정보화사회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진일보한 지원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추가(안 제6조제4호 신설)
- 안 제6조제4호는 본 조례 제2조제1호3)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안 제4호 가목)과 정보화 전문교육(안 제4호 나목) 및 사이버 교육(안 제4호 다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인 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제6조(추진사업)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u></p> <p><u>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u></p> <p><u>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u></p> <p><u>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u></p>

- 3)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과 사이버 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전산교육 뿐만 아니라, 실생활 중심의 모바일 교육을 확대하고, 무인단말기 같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ICT for All)’ 실현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웹접근성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 2018년 검사항목 평가점수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점수 하락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실태 조사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2018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결과보고 〉

웹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5.65점 하락한 84.66점

(단위 : 개)

구분	평가점수	합계	웹사이트 수					
			품질인증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미만
2018년	84.66	166	81	7	10	27	25	16
2017년	90.31	169	77	19	36	31	5	1
2016년	83.35	150	55	6	16	23	20	7

모바일앱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6.45점 하락한 76.10점

(단위 : 개)

연도	평가점수	평가점수	합계	모바일앱 수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60점미만
2018	Android	76.10	33	4	10	12	7	0
	iOS		33	4	5	13	11	0
2017	Android	82.55	40	6	6	14	9	5
	iOS		34	6	7	6	9	6
2016	Android	66.57	49	7	2	1	2	37
	iOS		42	5	1	2	3	31

〈2018년 검사항목 평가점수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점수 하락〉

- 진단 페이지에 검사항목이 없는 경우 점수에 반영하지 않음 ('18년 변경)

구분	2018년	2017년																																												
평가점수 산정방식 (변경)	<p>▶ 검사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 산정시 반영하지 않음</p> <table border="1"> <tr><td>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0.00</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0.00</td></tr> </table>	4	-	-	-	-	-	-	-	-	-	0.00	2	-	-	-	-	-	-	-	-	-	0.00	<p>▶ 검사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p> <table border="1"> <tr><td>4</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4.00</td></tr> <tr><td>2</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2.00</td></tr> </table>	4	○	○	○	○	○	○	○	○	○	4.00	2	○	○	○	○	○	○	○	○	○	2.00
4	-	-	-	-	-	-	-	-	-	0.00																																				
2	-	-	-	-	-	-	-	-	-	0.00																																				
4	○	○	○	○	○	○	○	○	○	4.00																																				
2	○	○	○	○	○	○	○	○	○	2.00																																				

자료: 스마트도시정책관, 「2019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 정보격차 해소 지원(안 제6조의2 신설)

- 안 제6조의2는 시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의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통신제품 확대 보급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동 조항은 상위법령(「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 제32조, 제35조)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인 바,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음.

<p>「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제품이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p>

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정부는 정보격차해소교육이나 정보격차해소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사랑의 PC보급 사업’, ‘정보화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를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사업 실적〉

- 사업내용 :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집합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장애인 및 직계가족, 55세 이상 고령인
- 사업예산 : 369,448천원(국비:시비=50:50)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7,858	17,341	17,457
·장애인집합교육	14,119	13,484	13,454
·고령인집합교육	2,984	3,857	4,003
·결혼이민자교육	755	-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랑의 PC 보급〉

- 대 상 : 서울시 거주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가족 등
- 사업내용 : 내용연수(5년)가 경과된 중고PC를 수집·정비하여 정보취약계층에게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
- 사업예산 : 362,350천원(국비 70,400천원 포함)
- '19년 보급목표 : 3,000대

※ 연도별 보급실적

(2019.3.31. 기준, 단위:대)

구 분	합 계	'16	'17	'18	'19. 3월
보급수량	10,007	3,002	3,103	3,171	731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PC기반 정보화 사회가 성숙기에 다다르고 스마트폰 기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 생활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는 바, 향후 스마트 정보격차가 소비자의 소비생활 복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기반한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 banking이나 온라인쇼핑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바일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중고 스마트폰 보급사업('12~'13년)

- 사업내용 : 이동통신사(LG U+, KT) MOU를 통해 수급자 등에게 중고 스마트폰 보급
 - MOU 체결 : LG U+('12. 8. 7.), KT('12. 11. 20.)
 - 이동통신사(자사 중고 스마트폰 기부 및 개통), 서울시(보급 신청 접수)

○ 연도별 보급실적

(단 위 : 대)

구 분	합 계	'12년	'13년	비고
LG U+	76	76	-	
KT	96	33	63	
누 계	172	109	63	

- ※ 중고스마트폰 성능 불만, 가격 상승 등 이동통신사 협약 종결('13.12.31.) 요청에 따라 사업 종료

- 결론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중 직원들의 상시 교육이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73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12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경우, 김호평, 문병훈, 봉양순,
송재혁, 이경선, 이광호, 이동현,
이세열, 이준형, 이현찬, 한기영
의원(12명)

1. 제안이유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 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 사업실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제6조 추진사업 중 제4호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가함(안 제6조제4호).
- 나.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추진사업)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u>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제6조의2(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p> <p>1. <u>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u></p>

- | | |
|--|---|
| | <p><u>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
· 무상 지원 사업</u></p> <p><u>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
격차 해소 사업</u></p> |
|--|---|